

英祖의 禮學

鄭景姬*

머리말

1. 老論禮學 견제와 新禮 창설

(1) 老論禮學 견제

(2) 新禮 창설

2. 正統論 인식: '尊王的 繼體論'

(1) 長子三年喪制 제정

(2) 永寧殿 祝式 개정

3. 崇奉·伸冤을 통해 본 '尊王的 禮學'

(1) 歷代 始祖 및 先祖 崇奉

(2) 先祖 伸冤

맺음말

머리말

선조 성리학이 조선의 국가 이념으로 채택된 이후 그 위상에 대한 다양한 입장 차이는 있어 왔으나 공식적인 국가 이념으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었으며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면서 그 위상 또한 점차 높아져 갔다. 성리학 이해의 진전 결과 16세기 후반~17세기 초에는 학파의 분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兩亂이라는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지면서 성리학 이해 방식의 차이는 더욱 심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兩亂의 후유증 해결을 위해 성리학의 '義理論'이 가지는 효용성이 매우 컸기 때문에 조선후기 성리학의 공식적인 위상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성리학의 '의리론'은 西人-老論 계열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肅宗 後半期 이래 국왕들도 '의리론'에 공감하면서 왕실이 이를 주도하려는 경향을 보였다.¹⁾ 이러한 경향은 특히 英祖代 이후 본격화되었다. 王世弟 시절 영조는 성리학의 聖學觀에 따라 '堯舜之治'를 이상으로 삼게 되었는데, 이는 영조 평생 학문의 중심축이 되었다. 영조 전반기 영조의 성리학 이해는 '의리론'에서 출발하면서도 현실적인 更張을 펼쳐야 하는 君王의 입장에서 '功利論'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절충된 것이었다.²⁾ 그러나 영조 후반기에는 탕평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치세 전반기에 시행된 諸更張策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성리학 이해 방식도 변화하게 된다. 특히 성리학의 '의리론'을 높이 평가, '의리론'의 비중이 높아진 점이 주목되며, 이 점에서 노론의 '朱子主義의 의리론'과의 접점도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영조는 學人이자 君王으로서 '堯舜之治'를 최우선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리론'의 전개 방식에서도 노론과

* 필자 : 규장각 책임연구원

1) 줄고, 1995, 「肅宗後半期 蕩平政局의 변화」, 『한국학보』79.

2) 줄고, 1998, 「英祖前半期(1724~1748) 중앙학계와 英祖의 性理學 이해」, 『한국사연구』103.

같은 ‘주자주의적 의리론’ 일반도의 방식을 취하지는 않아 功利 성향은 여전히 남게 되었다.³⁾ 왕세제 시절부터 경연을 통한 치열한 자기연마를 통해 학문적 중심을 갖춘 영조는 君師를 자부하였는데, 특히 치세 후반기에는 성리학의 ‘의리론’에 깊이 공감하게 되면서 『小學』을 중심으로 朝官·館·學 儒生 중심의 儒生層, 庶民層까지 널리 교화하였다.⁴⁾

본고에서는 영조의 학문이 예학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났던가를 밝히고자 한다. 영조대 정국의 주역인 노론이 ‘주자주의적 의리론’에 입각한 예학, 곧 ‘朱子禮學’을 중심으로 하였다면, 노론의 ‘의리론’에 대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영조의 예학은 과연 어떠한가를 밝히려는 것이다.

1장에서는 영조가 노론의 ‘朱子禮學’을 견제하면서 자신의 기준으로 新禮를 창설해 갔음을 밝히고자 한다. 2장에서는 영조에 의해 주도된 長子三年喪制 제정과 永寧殿 祝式 改正이라는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영조 예학의 正統論 인식이 ‘尊王的 繼體論’이었음을 살피고, 이로써 영조 예학의 尊王的 성격을 확인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영조 예학의 尊王的 성향을 歷代 始祖·先祖에 대한 崇奉, 先祖 伸冤 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살피고자 한다.

1. 老論禮學 견제와 新禮 창설

(1) 老論禮學 견제

숙종·경종대 老·少 정쟁의 중심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던 영조는 王世弟 시절부터 탕평을 통한 군주권 확립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노·소의 학문적, 정치적 대립은 극에 달한 상태였으므로 영조 즉위초에는 乙巳換局(1725년, 영조 1: 老論換局), 丁未換局(1727년, 영조 3: 少論換局)이라는 극약책이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정미환국 후에는 가장 歸王的이고 온건한 성향의 少論蕩平派를 중심으로 탕평을 시작하여 노·소 당론의 예봉을 잠재웠고, 소론탕평파의 도움으로 탕평이 궤도에 올라서게 되는 영조 16~17년 무렵에는 소론탕평파의 공조도 떨어져 버리고 영조가 중심이 되는 득의의 탕평을 시작하였다. 이때에는 무엇보다도 영조의 군왕으로서의 존립 근거가 되는 辛壬義理論을 확정하였는데, 이로써 신임의리론의 당사자인 노론에게는 영조 탕평의 동반자적인 지위가 부여되었다. 이후 영조의 탕평은 노론의 신임의리론을 기초로 전개되었으나, 정치세력면으로는 노론에게 전권이 부여된 것은 아니었다. 각 당색을 막론하고 峻論者들이 배제되고 탕평에 우호적인 緩論者들이 조용되었는데, 그 중심은 일부 외척계 蕩平黨 세력, 그 중에서도 신임의리론이라는 정치

3) 참고, 1999, 「英祖前半期(1749~1776) 經筵과 英祖의 義理論 강화」, 『역사학보』162.

4) 참고, 1999, 「君師 英祖의 性理學 진흥책」, 『한국학보』97.

적 이점을 안고 있던 노론 탕평당계였다.⁵⁾

탕평을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영조에게 가장 버거운 세력은 노론세력이었다. 득의의 탕평을 위해 노론의 신임의리론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신임의리론 및 영조 즉위를 도운 공로를 내세우면서 영조를 제압하려 드는 노론을 억제해야 했던 것이다. 이는 비단 정치적인 문제에 그친 것은 아니었다. 학문적으로도 노론의 '의리론'은 숙종 후반기 이래 조선 국왕에게 효과적인 통치술로서 주목되었고, 이에 국왕이 오히려 '의리론'을 주도하려는 경향까지 보였는데, 숙종을 이어 영조 역시 그러하였다. 따라서 영조는 즉위초부터 정치적, 학문적으로 노론의 제압에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조 즉위후 노론은 정치적인 면에서 소론을 강하게 공격하였을 뿐 아니라 예학적인 면에서도 '주자예학'에 의거, 경종대 관철된 소론의 禮說을 공격하고 노론의 오랜 당론이었던 예설들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우선 경종대 소론의 주도로 이루어진 경종의 생모 禧嬪의 大嬪追崇事를 誤禮로 비판하였다. 노론 대신 閔鎭遠은 “朱子說에 出母는 다시 맞아들일 수 없다는 조항이 분명하니 희빈의 追封은 誤禮로 명백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⁶⁾ 校理 金鎭尙은 『禮記』에 出母에게는 無服 조항이 분명한데도 辛巳年(숙종 27년 禧嬪喪) 숙종이 세자(景宗)에게 總麻服을 입힌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며 숙종의 처분을 비판할 정도였다.⁷⁾ 그러나 이는 追崇·入廟한 경우와는 사정이 달라서 처분이 뒤집히는 데 이르지 않았다.

또 송시열이 현종 2년 이래 朱子の 「禘議」를 근거로 太廟制의 정비를 주장한 예설을 새삼스럽게 거론,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곧 주자는 「禘議」에서 宋 太廟에서 兄弟之間인 太祖·太宗, 哲宗·徽宗을 一代로 삼는 전례를 비판하고, 또 太廟에 창업주인 太祖 이하만 있고 태조의 四祖가 배제된 점을 비판하면서 太祖의 高祖는 始祖廟로서 당연히 太廟의 不遷位로 모셔들여야 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현종 2년 송시열은 이를 근거로 조선의 太廟에서도 형제 지간인 仁宗·明宗이 一代로 모셔져 있는 점을 비판하고 永寧殿에서는 최소한 昭穆을 달리 해야 하며 또 태조의 高祖인 穆祖는 종묘의 不遷位로 해야 함을 주장했다.⁸⁾ 영조 원년 掌令 成震齡은 주자와 先正(송시열)의 논의에 따라 景宗의 祔廟를 계기로 太祖의 高祖인 穆祖를 종묘의 不遷位로 모셔들여야 함을 주장하였다.⁹⁾ 성진령은 이와 함께 종묘의 配享臣에

5) 졸고, 1998, 앞의 논문, 『한국사연구』103, 195~198면; 1999, 앞의 논문, 『역사학보』162, 25~27면.

6) 『영조실록』 권4, 영조 원년 3월 병오.

7) 『영조실록』 권4, 영조 원년 3월 계해.

8) 『현종실록』 권4, 현종 2년 5월 정사.

9) “지금 先大王(경종)을 宗廟에 모시면서 廟宇를 넓히려 하니, 주자와 先正(송시열)의 논의를 따라 穆祖를 종묘의 第一室로 봉안하여 시조로 삼고 太祖와 太宗 이하 諸世室과 四親의 神主를 순서대로 배열하고 또 太廟에 東·西 夾室을 만들어 翼祖 이하의 祧主를 봉안하면 명분이 바르게 될 것이다.”(『영조실록』 권8, 영조 원년 12월 무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송시열을 孝廟에 追配享하고 肅廟에서는 南九萬 등 세 명의 少論臣을 내칠 것을 청하였다.

노론은 또 노론 禮家 金長生의 대표적인 예서인 『喪禮備要』를 禮文의 척도로서 제시, 왕가에서도 마땅히 이를 기준삼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곧 영조 4년 孝章世子喪에서 영조의 祭와 入廟의 선후를 살피기 위해 『가례』를 가져와 살피려 하자 史官 洪昌漢은 “『喪禮備要』는 동방 禮文家의 三尺으로 王家에서도 마땅히 준용해야 한다”고 하였던 것이다.¹⁰⁾

영조는 을사환국시에도 전면적 노론환국을 삼가고 탕평을 염두에 둔 처분을 내렸으며 학문적으로도 노론의 ‘주자주의’를 공인하는 것을 삼갔다. 노론의 공세에 대응하여 정미환국을 한 후에는 노론산림에 대한 배척의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반면 소론산림 鄭齊斗·梁得中·沈埴 등은 영조의 탕평에 우호적이어서 우대되었으나 산림억제책에 따라 실제 정국에서의 영향력은 미미하였으며, 영조는 오히려 소론탕평파 관료인 趙文命·趙顯命 형제 및 宋寅明·李宗城·李德壽 등과 학문을 강마하였다.¹¹⁾ 이처럼 산림, 특히 노론산림에 대한 억제책은 영조 치세 내내 계속되었다.

이러하였으므로 영조는 노론의 예설에 대해 노론산림에서 나온 당론으로 이해, 거부하였다. 앞서 제기된 노론측의 예설이 수용되지 못한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노론 예설의 공인에 관건이 되는 문제는 바로 양차예송에 대한 것이었다. 양차예송시 노론의 예설은 ‘王者禮不同士庶論’에 바탕한 것이었는데, 왕실의 입장에서는 이를 공인하는 것이 불가하였다. 따라서 영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왕실의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곧 영조 5년 영조는 숙종의 치적을 담은 『肅宗寶鑑』의 편찬을 명하면서 甲寅年(현종 15) 예론(甲寅禮訟)과 壬戌年(숙종 8) 이후 斯文에 관한 일(老·少 분기) 등을 수록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때에 영조는 숙종이 동왕 43년(1716년) 丙申處分으로 송시열을 복권시킨 것이 양차예송시 송시열의 예설을 공인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던 것이다.¹²⁾ 이처럼 영조는 득의의 탕평을 성사시키기 위해 특히 노론의 견제에 주력하였는데, 예학 면에서도 그러하였다. 곧 영조는 득의의 탕평을 성사시키기 위해 특히 노론의 견제에 주력하였는데, 예학 면에서도 그러하였다. 곧 영조는 노론의 ‘주자예학’의 관점에서 벗어나 국왕의 입장에서 독자적인 예학 인식을 갖추고자 하였던 것이다.

10) 『영조실록』 권28, 영조 6년 11월 임진.

11) 줄고, 1998, 앞의 논문, 118면, 198~199면.

12) “丙申年(숙종 43년의 丙申處分) (숙종이) 단지 先正(송시열)의 원통함을 신설해 주고 邦禮에 대한 是非에 대해서는 분부가 없었다. 이처럼 斯文事는 先朝의 분부가 있으니 『肅宗寶鑑』에 실을 필요가 없다.”(『영조실록』 권24, 영조 5년 10월 임술)

(2) 新禮 창설

영조는 노론의 ‘주자예학’에 구애되지 않고 많은 新禮들을 창설하였는데, 이는 國制(『經國大典』·『國朝五禮儀』)를 기준으로 했던 부왕 숙종의 예학 인식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었다. 숙종대까지만 하더라도 王禮 운영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왕실은 國制를 기준으로 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곧 甲寅禮訟시에 남인의 예설을 취하였던 숙종의 경우도 換局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예설이 문제될 때 문제를 더 확산시키지 않고 오로지 國制를 기준으로 하였다. 왕실의 입장에서는 서·남인의 예설이 내포한 ‘天下同禮論’과 ‘王者禮不同土庶論’의 관점이 거론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문제였기 때문이다. 숙종에 의해 기준으로 내세워진 국제는 조선 전기의 예학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조선 중·후기 이래 주자예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많은 한계를 지닌 것으로 비판되어 왔다. 영조초에도 마찬가지였다. 곧 『오례의』는 너무 소략하여 예조에서는 대체로 왕실의 전례를 상고하여 보충하는 것이 보통이었다.¹³⁾

부왕 숙종과 달리 영조는 애초부터 국제를 고집하지 않았다. 주자예학에 기초한 당시의 일반적인 예학 인식에 비추어 더 이상 국제라는 권위에만 기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영조는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령 영조 즉위년 景宗喪시에 영조는 일체를 『國祖五禮儀』에 따르도록 하였는데, 신하들이 『오례의』에 소략한 점이 많으니 因山후 예에 밝은 신하를 모아 수정할 것을 요구하자 영조는 곧바로 수락하였다.¹⁴⁾

『오례의』에 기대지 않을 경우 영조에게는 土論, 곧 노론 또는 소론측의 예설을 따르는 방법이 있었는데, 영조는 그 대신 자신의 기준으로 새로운 예제(新禮)를 과감하게 창설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가령 景宗喪시에 山陵의 代奠官과 守陵官의 陪祭 여부가 『오례의』에 나오지 않는다는 禮曹의 啓辭에 대해 “예는 情에서 나오니 『오례의』에 없는 것은 변통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산릉의 朔望·小祥시에 守陵官은 일체로 陪祭하고 代奠官은 奠爵 후 단지 朔望의 殷奠에만 참여하라고 정해 내렸다.¹⁵⁾ 또 魂殿 告祭시 『오례의』에는 薰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조는 大祥 뒤 朔望의 祭例에 의거하여 爵을 쓰라고 하였다.¹⁶⁾ 이처럼 영조는 즉위초부터 국제에 얽매이지 않고 또 예조의 논의나 土論에 기울지도 않고 스스로 새로운 예제를 만들어 나가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분명해졌다.

영조 4년 孝章世子喪에서는 백관복으로 처음에는 齊衰三月服으로 정하였다가 신하의 도리로 세자를 위해 齊衰朞年服을 해야 한다며 변경하고 白布·白帽의 복색을 정해 내렸

13) 『영조실록』 권29, 영조 7년 5월 계유.

14) 『영조실록』 권1, 영조 즉위년 9월 병오.

15) 『영조실록』 권2, 영조 즉위년 12월 계유.

16) 『영조실록』 권32, 영조 8년 8월 임술.

다.¹⁷⁾ 영조 10년 孝章世子嬪(賢嬪)의 부친인 豊陵府院君 趙文命의 상에서 嬪宮의 除服후 心喪과 관련하여 金若魯는 『通典』을 인용하여 3년 심상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鄭齊斗는 심상제는 南朝의 創說일 뿐이며 왕조의 正禮(『五禮儀』)에 의하면 心喪을 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하였다. 이에 영조는 『통전』과 『오례의』를 검토한 다음 “鄭齊斗가 心喪을 남조의 창설이라고 본 점은 잘못이다”라고 지적한 후 “『통전』과 상관없이 『오례의』의 명문을 잘 살펴보면 心喪이라고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13개월후 除服시 素服을 올린다’는 문구가 除服후 心喪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13개월 후 衰服을 벗어 땅에 묻고 心喪으로 再葬을 마치게 하라고 판정하였다.¹⁸⁾ 산림학자들의 의견에 상관없이 친히 禮書를 상고한 후 독자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동왕 19년에는 御宴의 雅樂·佾舞를 재정비하여 『內宴儀軌』를 이정하게 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會禮宴儀』를 준용하여 外庭에서 妓樂을 정지하고 舞童을 쓰게 하고 또 『樂學軌範』의 9爵을 5爵으로 줄인 것으로,¹⁹⁾ 이 역시 영조의 주도에 의한 것이다.

치세 후반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오례의』에 미비된 조항을 계속 창설해 나갔다. 동왕 27년 孝章世子嬪(孝純賢嬪)喪에서 『오례의』 중에 結裹儀註가 없음이 문제가 되자 영조는 結裹布는 3疋을 규식으로 할 것을 정해 내렸다. 동왕 28년의 懿昭世孫(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소생)으로 영조의 첫째 손자)喪에서는 墓를 喪家로 사용하는 새로운 규식을 만들어 시행하였으며, 이외에도 銘旌 등의 세부 절목을 일일이 지적하여 침입하였다.²⁰⁾ 동왕 33년 3월 仁元王后(숙종의 第三妃이자 영조의 繼母)喪에서 영조는 직접 擧를 따라 갈 것을 고집하여 부득불 실천에 옮겼다. 이는 列朝에 없던 일이었으며, 그밖에 斂殯·祭奠 외의 자갈한 형식도 몸소 주관하고 의심나는 예절과 절차를 강구하여 당시 자신이 기획하고 있던 『國朝喪禮補編』에 일일이 기록하게 하였다.²¹⁾ 동년 中宮(貞聖王后)喪도 겹쳤는데 영조는 인원왕후의 魂殿(孝昭殿)을, 왕세자는 정성왕후의 魂殿(徽寧殿)을 각기 맡아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상례를 치렀다. 이즈음 영조의 예제 주도에 대해서는 신하들도 모두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따라서 국왕이 직접 擧를 따르는 획기적인 전례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비판은 일어나지 않았다. 신하들은 『국조상례보편』 편찬과 관련하여 자질구레한 고증에 주력할 뿐이었다.

영조 38년 思悼世子喪은 왕실의 비극으로 喪禮는 變禮로 치루어졌다. 이때 영조는 成服도 除하고 烏帽·黻袍로 하게 하였고 百官의 경우는 淺淡服으로 한 달 안에 마치며 世孫은 비록 삼년상을 해야 하나 進見할 때나 장례 후의 복식은 淡服으로 하는 등 변칙적인 복제를 정해 내렸다. 또 유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發靱·返虞하는 날에 세손이 謁門 밖에서 奉辭·奉迎하는 절차도 금하였다.²²⁾

17) 『영조실록』 권20, 영조 4년 11월 입술, 12월 병신.

18) 『영조실록』 권38, 영조 10년 7월 을유.

19) 『영조실록』 권58, 영조 19년 7월 계묘 갑진, 9월 경인 무술.

20) 『영조실록』 권77, 영조 28년 7월 임오.

21) 『영조실록』 권90, 영조 33년 7월 신축.

영조의 新禮 창설에는 주자예학에 바탕한 士論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가령 영조 20년 예조판서 閔應洙는 『오례의』에 사당 배알시 남녀 모두 再拜한다고 되어 있으나 明禮에는 女八拜, 男四拜로 되어 있으니 강구할 것을 청하였다. 우상 宋寅明은 『家禮』 중의 '俠拜'란 글로 살펴면 여자가 남자보다 곱절임이 맞다고 하였고, 尹鳳九도 주자의 俠拜 원칙 및 明禮에 따라 八拜가 맞다고 하였다. 朴弼傳 역시 주자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영조는 王朝의 예는 王朝의 예를 따를 뿐으로 俠拜는 그만두라고 하였다.²³⁾ 왕실의 입장에서는 왕조례에 주자예학적 기준을 전적으로 적용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웠으므로 영조는 주자예학에 구애되지 않았던 것이다.

영조대 영조가 창설한 新禮들은 특히 喪禮에 관한 것이 많았는데, 이들은 영조 34년 『國朝喪禮補編』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났다. 곧 영조 4년 孝章世子喪, 동왕 27년 孝章世子嬪喪, 동왕 28년 懿昭世孫喪, 동왕 33년 貞聖王后喪·仁元王后喪 등을 거치면서 영조는 많은 신례들을 창설하였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국조상례보편』에 등재되었다. 영조 20년에 완성된 『續五禮儀』가 국제인 『五禮儀』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인 데 비해 『國朝喪禮補編』은 영조가 창설한 新禮들을 등재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2. 正統論 인식: '尊王的 繼體論'

(1) 長子三年喪制 제정

영조는 國制나 士論 등에 구애되지 않고 많은 新禮들을 창설하였는데, 그 배후에는 正統論에 대한 영조의 이해 방식인 '尊王的 繼體論'이 자리하고 있었다.²⁴⁾ 예학에서 정통론 인

22) 『영조실록』 권99, 영조 38년 윤5월 계미: 권100, 동년 7월 계유.

23) 『영조실록』 권60, 영조 20년 8월 무신: 『增補文獻備考』 권5, 禮考4 宗廟3 薦新.

24) 필자는 선조 조선왕실이 正統論의 면에서 '新禮學'의 義理論의 正統論('繼統' 위주의 정통론)을 따르면서도 한편으로 왕실의 功利的인 입장에 따라 '親屬' 위주의 정통론을 절충하였다고 보았다(졸고, 2000, 앞의 논문, 69면 註 135). 필자는 의리론적 정통론을 '繼體論', 의리론적 정통론에다 친속 위주의 방식을 절충한 방식을 '血緣論'으로 부르고자 한다. 조선전기 사림들은 '繼體論' 이해에 있어 '繼統=繼體'를 극히 의식, 계통을 이은 경우는 '倫序'에 상관없이 父子관계로 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朱子禮學'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특히 주자예학을 전공한 노론들은 '계체론' 이해에 있어 '倫序'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倫序的 繼體論'으로 부를 수 있다. 조선전기의 단순한 '繼體論' 이해가 조선후기에 이르러 '倫序的 繼體論'으로 보다 심화된 것이다. 반면 영조는 '倫序'의 면을 철저히 무시하고 '傳重', 곧 '繼體'만을 강조하였다. 영조가 '繼體'를 극도로 강조한 것은 탕평군주의 '尊王'의 입장에서 서서 正統論을 이해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尊王的 繼體論'으로 부를 수 있다. 영조의 '尊王'의 입장은 과도할 정도여서 때로는 '繼體論'을 넘어서기도 하였다. 가령 宗廟·永寧殿 祝式에 있어 德宗과 같은 비정통군주와 정통군주의 차이를 없애 버린 경우가 그러하다(본서 218면 참조). 그러나 대체로 영조는 '尊王'의 입장에서 '倫序'는 무시하고 '繼體'만을 중시하는 '존왕적 계체론'의 입장을 보였다.

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생각해 볼 때, 영조의 ‘존왕적 계체론’은 영조 예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영조에 의해서 창설된 허다한 신례들의 제정 기준이자 영조대 영조에 의해 주도된 王禮 운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영조의 ‘존왕적 계체론’은 영조대 제정된 대표적인 新禮인 ‘長子三年喪制’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영조 4년 孝章世子(영조의 長子)喪이 있었다. 이때는 정미환국후 소론탕평파를 중심으로 탕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로, 소론산림으로 영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 鄭齊斗가 상을 이끌었다. 앞서 경종상시 정제두는 “帝王家は 私家와 달리 대통을 잇는 경우 繼體의 법을 강조하게 되므로 비록 영조가 경종의 弟이나 子服으로 삼년복을 입게 된다”며 영조의 복으로 子服 三年服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繼體論’에 의한 것이다. 정제두는 ‘계체론’을 경종과 영조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효장세자에게로도 확대하여, 효장세자는 비록 仁元王后의 嫡孫이지만 계체의 논리에 따르면 曾孫이 되므로 仁元王后는 曾孫服을, 영조는 子服(菴年服)을 입어야 한다고 했다.²⁵⁾ 정제두의 ‘계체론’ 이해에는 ‘倫序’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었으므로 당시 주자예학의 ‘윤서적 계체론’에 의한 비판이 제기되었다.²⁶⁾ 그러나 당시 정국은 戊申亂의 수습과 관련하여 매우 불안하였으므로 반론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잠재되어 있다가 동왕 27년 孝章世子嬪(孝純賢嬪)喪에서 재발하였다.

효장세자빈상 당시에는 영조 주도의 탕평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영조 전반기 蕩平主人인 소론탕평파 대신 老論蕩平派의 역할이 높아져 있었으므로, 상은 노론탕평파 대신이며 예학에 조예가 깊어 肅宗喪 이래 주자예학에 입각한 國喪制 정비에 깊이 관여하였던 영상 金在魯에 의해 주관되었다. 당시 노론측의 입장을 대변한 김재로의 예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효장세자상에서 적용된 정제두의 ‘繼體論’ 이해에 ‘倫序’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음을 비판하고 ‘倫序의 繼體論’을 주장한 것이다. 둘째는 영조의 효장세자빈에 대한 嫡婦服으로 國制인 『經國大典』 조항에 따르지 않고 『儀禮』를 따른 점이다.

우선 첫째 문제와 관련하여 김재로는 仁元王后의 복을 문제삼았다. 영조 4년 효장세자상에서 인원왕후는 정제두의 주장에 따라 曾孫服을 입었는데, 이에 따를 경우 이번 효장세자빈상에서도 인원왕후는 曾孫婦服을 입어야 했다. 그러나 김재로는

禮는 正名보다 큰 것이 없는데 甲辰年(영조 즉위년) 國恤(경종상) 때 영조가 (경종에 대한 子服으로) 산발을 하고 무신년(영조 4년) 효장세자상에서 대비전(인원왕후)이 曾孫服을 입고 宣懿王后(경종비)가 孫服을 입은 것은 名理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비록 繼體를 중시한다 하나 형제의 天倫은 變亂이 불가합니다. 전하께서 경종과 선의왕후상에 삼년복을 입는

25) 『영조실록』 권20, 영조 4년 11월 계해.

26) “繼體가 비록 중요하기는 하지만, 칭호와 服制는 본래 서로 상응하는 법입니다. 이름이 이미 정해졌다면 복제 또한 거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영조실록』 권21, 영조 5년 1월 무진. 正言 李龜休의 상소)

것은 옳습니다. 다만 형제의 倫紀로써 부자의 親愛로 삼으면 불가하니 무신년의 복제는 큰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²⁷⁾

라며 정제두의 ‘계체론’ 이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天倫인 ‘倫序’를 중시하는 ‘윤서적 계체론’을 주장한 것이다. 곧 경종상에서 영조가 비록 弟이나 大統을 이었기 때문에 子服(삼년복)을 해야 하지만 형제라는 倫序가 있으므로 散髮까지 해서는 안되며, 또 인원왕후도 효장세자의 할머니라는 倫序에 따라 효장세자빈에게 증손부복이 아닌 嫡孫婦服을 입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자예학의 정통론인 ‘계체론’을 따르되 윤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윤서적 계체론’을 제시한 것이다.

둘째, 김재로는 인원왕후의 적손부복을 『경국대전』의 小功服 대신 『가례』·『의례』에 따라 麻服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²⁸⁾ 주자예학에 밝은 그로서는 국제보다는 주자예학에서 古禮(三禮: 『의례』·『주례』·『예기』) 중 經으로서 가장 중시한 『의례』 및 주자의 예서인 『가례』를 따르고자 한 것이다.

김재로의 예설은 노론산림에 의해 적극 지지되었다. 前府使 朴弼傳은 “帝王家에서 비록 繼體를 중히 여기나 服制에 있어서는 天倫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고, 進善 尹鳳九도 “제왕가에는 統緒를 중시하여 비록 繼體의 의리가 있으나 祖孫은 천륜입니다. 名實이 한 번 정해지면 손자가 변하여 증손자가 될 수 없으니 孫婦에 대해서도 總服을 입음은 禮經에 분명합니다”라며 적극 찬성하였다. 반면 소론산림인 대사헌 沈鎬은 “효장세자상의 前例를 바꿀 수 없다”며 정제두의 예설을 고집하였다. 영조는 “繼體가 비록 중하나 倫序도 문란할 수 없고 戊申年 服制는 세밀히 관찰하지 않은데서 나온 것이다”라며 김재로 이하 노론측의 ‘윤서적 계체론’을 수용하였다.

영조는 ‘윤서적 계체론’을 수용하면서도 小功服을 總麻服으로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國制가 명백하였으므로 의심을 품었다. 곧 “시어머니가 있으면 소공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이 『가례』에 나와 있으나 국조 전례에 근거할 만한 것이 없으니 그대로 소공복을 하라”고 한 것이다.²⁹⁾ 그러나 이러한 반대도 잠시, 결국 영조는 김재로의 주장대로 인원왕후의 복을 소공복에서 시마복으로 개정하였다. 이어 김재로는 영조와 중궁의 복도 『儀禮』에 따라 大功으로 정해 올려 그대로 준행되었다.³⁰⁾ 이처럼 영조 27년 효장세자빈상에서는 노론측의 주장이 모두 수용되었다. 노론측의 ‘윤서적 계체론’과 『가례』·『의례』 중심의 복제론은 한결 같이 주자예학에 철저한 방식이었다.

27) 『영조실록』 권74, 영조 27년 12월 정미.

28) “『의례』에는 ‘嫡자가 있으면 嫡孫이 없다’고 하였고, 『가례』에는 ‘嫡孫婦는 小功을 입으나 媼母가 있으면 그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마땅히 小功服을 강등해 總服으로 해야 하는데 國朝에서 시행한 예에 考據할 만한 것이 없으니 마땅히 講定해야 합니다.”(위와 같음)

29) 『영조실록』 권76, 영조 28년 3월 을축.

30) 『영조실록』 권76, 영조 28년 3월 을축 무진.

이러던 중 영조 28년 3월에 사도세자의 3살 난 아들 懿昭世孫이 흥거하였다. 효순현빈상을 이어 의소세손상을 주관한 김재로는 『의례』 중 “嫡자가 있으면 嫡孫은 있을 수 없다”라는 조항을 들어 지금 영조의 嫡자인 東宮(思悼世子)이 있으므로 의소세손을 적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영조는 적손복으로 暮年服을 입지 않고 大功服을 입기로 하였다.³¹⁾ 이때도 김재로는 역시 주자예학상의 예경인 『의례』를 근거로 하였다.

兩喪(효장세자빈상·의소세손상)에서 영조는 처음 김재로의 주장을 쉽게 수용하였으나 점차 의심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다. 곧 3개월여 후에 영조는 兩喪에서 김재로가 邦禮(國制)가 아닌 私禮(『가례』·『의례』)를 근거로 하였음을 문제삼았다.³²⁾ 곧 김재로는 효장세자빈상에서 영조의 효장세자빈에 대한 복으로 『의례』에 따라 大功服說을 주장, 채택되었다. 이때 영조가 의심없이 이를 따른 것은 영조 4년 효장세자상에서 자신이 효장세자에 대해 기년복을 입었기 때문에 효장세자빈과 차등을 두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후 『오례의』에 懸註없이 “嫡子婦와 庶子婦에게 모두 暮年”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고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더욱이 부왕인 숙종이 숙종 44년 端懿嬪(景宗의 第一妃로 후에 端懿王后로 추존됨)喪에서 嫡子婦服으로 國制에 따라 기년복을 입은 사실을 알고는 『의례』의 대공설을 주장한 김재로를 더욱 의심하게 되었다. 영조는 국제 및 숙종대의 전례를 무시하고 한결같이 주자예학을 따르고자 한 노론 예설에 대해 국왕의 입장에서 그 득과 실을 생각해 보게 된 것이었다.

김재로는 효장세자빈상의 복제에 대해 자신이 전적으로 의거한 『의례』 「天子諸侯正統旁系服圖」의 “嫡長子에게는 斬衰, 嫡子婦에게는 大功, 嫡孫에게는 齊衰, 嫡자가 있을 경우 嫡孫服은 없다”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는 제왕가의 服圖로서 이것이 바로 邦禮일 뿐이라고 변명하였다. 그는 의소세손의 복제에 대해서도 “『의례』에 ‘嫡자가 있으면 嫡孫이 없다’고 되어 있으니 이것이 邦禮가 아닐 수 없다”고 하였다. 주자예학을 전공한 김재로로서는 조선초에 나온 『경국대전』·『오례의』는 주자예학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수준에서 나온 禮書로 비록 國制의 이름이 있으나 실제로는 많은 한계를 지닌 예서일 뿐이므로 이제는 주자예학에 따라 주자예학상의 禮經인 『의례』를 방례로까지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김재로는 또 “이러한 古禮(『의례』)가 唐 이후 며느리의 舅姑(시부모)에 대한 복이 삼년복으로 되면서 舅姑가 며느리를 위한 복 또한 더하여 기년복으로 늘어났다”는 설명을 덧붙여 국제 『경국대전』은 당대 이후의 예를 준거한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곧 『경국대전』 「五服」조에 아들의 경우 장자·중자의 구분없이 기년복, 며느리는 장자부·중자부를 구분하여 기년·대공으로 한 것은 당대 이후의 예를 따른 杜撰이라고 한 것이다. 국제인 『경국대전』이 古禮가 아니라

31) 『영조실록』 권76, 영조 28년 3월 을축.

32) “孝純賢嬪과 懿昭世孫의 복제에 있어 대왕대비전(인원왕후)에 대해서는 ‘嫡孫婦에게는 小功服을 입으나 시어머니(姑: 현빈의 시어머니인 영조비)가 있으면 아니다’를 적용하였고, 내계는 『의례』의 ‘嫡자가 있으면 嫡孫은 없다’를 적용하였다. 이는 비록 『의례』와 『가례』에 실려 있으나 邦禮는 아니다. (...) 邦禮를 따를 것인가? 私禮를 따를 것인가?”(『영조실록』 권77, 영조 28년 7월 임오)

당대 이후의 예를 따른 것이라며 국제의 유래와 그 미비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이다.

김재로의 국제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 『오례의』에 士庶喪의 成服 외의 國喪의 五服에 대해 언급이 없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는 국제의 한계를 지적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따른 숙종대의 前例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였다. 곧 선조 世宗이 『의례』를 따라 며느리인 嬪宮(문종비 顯德王后)喪에 大功服을 입었음을 높이 평가한 다음, 숙종이 단의빈상에서 국제에 따라 기년복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하였다.³³⁾ 영조 27·28년 효장세자빈상·의소세손상에서 드러난 바 김재로의 예설은 주자예학상의 예경인 『의례』를 기준으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제인 『경국대전』과 『오례의』를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주자예학에 입각한 노론예설의 기본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김재로의 변명에 대해 영조는 古禮를 따르고자 한다면 국제에 실린 바 嫡子婦의 기년복을 大功服으로 개정할 뿐 아니라 역시 국제에 실린 嫡子에 대한 기년복도 삼년복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김재로를 강박하였다.³⁴⁾ ‘長子三年喪制’를 주장한 것이다. 곧 김재로가 자신의 예설을 증명하기 위해 『의례』 「天子諸侯正統旁莽服圖」의 복제규정을 가져오자 영조는 그 내용중 “長子에 대한 斬衰三年”이라는 부분에 착목하여 김재로가 적자부의 복은 『의례』를 따라 기년에서 대공으로 낮추면서 왜 적자의 복은 기년에서 삼년으로 올리지 않느냐고 강한 불만을 표한 것이다. 곧 노론이 주자예학에 입각하여 『의례』 준수를 주장하자 영조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전일적으로 『의례』를 적용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영조의 ‘장자삼년상제’는 양차예송시의 쟁점으로 갑인예송 이후 한결같이 국제가 기준이 되면서 논의가 금기시되어 오던 부분이었다. 곧 己亥禮訟(1654년)에서는 사망한 효종에 대한 인조비 仁宣王后의 복이 문제되었다. 이때 남인 허목은 『의례』 傳文을 근거로 장자를 위한 齊衰三年服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서인은 『의례』 疏文(賈公彥疏) 중의 장자삼년복에 대한 제한 조건, 곧 四種之說에 의거, 효종을 體而不正한 衆子로 이해, 衆子服으로 莽年服을 주장하였다. 『의례』 賈公彥疏에는 장자를 위해 참취복을 입는 경우로 祖, 父, 그리고 자신이 적통으로 이어온 경우에만 한하였다. 또 장자로 계승한 경우에도 참취삼년복을 입지 못하는 4가지의 경우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 중 하나가 바로 體而不正說이다. 주자의 嫡傳으로 주자의 『儀禮經傳通解』를 이어 『儀禮經傳通解續』 「喪禮」편을 편찬한 黃은 이 내용을 「喪服傳」 부분에 올렸다. 조선에서도 주자예학에 가장 집중한 서인측에서는

33) “모두들 戊戌年(숙종 44년) 追改(숙종이 처음에는 大功服으로 정하였다가 다시 『經國大典』에 따라 莽年服으로 바꿈)한 것이 잘못이었는데 이제 비로소 바른 도리를 얻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음)

34) “卿(金在魯)이 古禮(『의례』)를 따르고자 한다면 어찌 嫡子의 경우 莽服이 되는 것을 釐整하지 않고 단지 嫡子婦의 大功이 되는 것만을 이정하고자 하는가? (...) 내 생각으로는 적자에 대한 기년복을 삼년복으로 고쳐야 한다. 경의 筭子가 나를 일깨웠으니 대답하라.”(위와 같음)

이 조항을 매우 중시하였고, 金長生은 『喪禮備要』에 이 조항을 실었다. 이에 따라 양차예송에서 송시열·송준길 등 서인 예가들도 이를 계승하였다.³⁵⁾

갑인예송에서는 사망한 효종비에 대한 인조비 인선왕후의 복이 문제되었는데, 이때에도 기해예송에서와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었다. 곧 남인 허목은 『의례』 傳文을 근거로 長子婦를 위한 齊衰朞年服을 주장하였고, 서인은 『의례』 疏文(賈公彥疏) 중의 장자삼년복에 대한 제한 조건, 곧 四種之說에 의거하여 衆子婦를 위한 大功服을 주장하였다.

국제에는 적자·중자를 막론하고 기년복, 적자부는 기년복, 중자부는 대공복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기해예송시에 서인은 국제에 적자·중자복이 모두 기년복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기년설이 국제에 의거한 것임을 주장, 서인의 사종지설을 감추고 쟁점을 회피할 수 있었고 이에 서인의 예설이 채택되었다. 반면 갑인예송에서는 국제에 적자·중자부복이 기년·대공복으로 다른 점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결국 서인의 대공복설이 국제가 아니라 사종지설인 ‘체이부정론’에 근거하고 있음이 밝혀지게 되었고 서·남인 예설의 ‘天下同禮’·‘王者禮不同土庶’적인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처럼 쟁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상태에서 당연히 남인이 승리하였다. 그러나 이후 숙종은 한결같이 國制를 기준으로 삼았고 더 이상 논의가 번지는 것을 회피하였다.

갑인예송의 경험 이후 서인들은 더 이상의 논쟁을 회피하였으나 왕실에 대해 꺼릴 점이 없는 남인들은 지속적으로 삼년복을 주장하였다. 가까이는 영조 즉위년 경종상에도 남인들은 장자삼년복설을 주장하였다. 곧 이때 大妃(인원왕후)의 경종에 대한 복으로 국제의 기년복이 결정되었다. 이때 남인 大司憲 李仁復은 嫡長子에 대한 복으로 참최삼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양차예송시 尹鑄의 주장을 답습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경종상을 집상한 李光佐·鄭齊斗 등은 국제를 내세워 이 견해를 일축하였다.³⁶⁾ 이인복의 주장은 前正言 羅學川 등에 의해 재론되었으나³⁷⁾ 전혀 재고되지 않았다. 그런데 영조가 영조 28년 김재로의 논의를 계기로 이 문제를 재차 제기하였고 결국 ‘장자삼년상제’를 제정하였다. 이때 영조의 하교 중에서

아! 喪服은 비록 輕重과 大小의 구분이 있되 情에서 비롯되고 禮에서 나옴은 마찬가지로이다. 경자년(경종 즉위년 숙종상) 이후 方喪의 제도가 크게 갖추어졌는데 이제 또 禮經에 실린 바 長子에 대한 삼년복제를 복구한다면 三代의 옛 제도를 복구하고 昔年の 聖德(경자년의 최질제 회복 - 필자주)을 繼述할 수 있을 것이다. (...) 삼년상은 천하의 공통된 喪制인데 아직도 능히 행하지 않고 있으니 누가 傳重의 중요함을 알아 長子를 위해 衰服을 입을 것인가? 아! 여러 신하들은 비록 나를 위한다 하지만 나는 傳重을 중요하게 여기고 古典을

35) 『영조실록』 권77, 영조 28년 7월 임오.

36) 『영조실록』 권1, 영조 즉위년 8월 경자.

37) 『영조실록』 권2, 영조 즉위년 11월 기미.

아끼노라. (….) 禮曹로 하여금 즉시 장자를 위한 삼년복을 복구하게 하라.³⁸⁾

는 부분은 ‘장자삼년상제’에 대한 영조의 예학적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곧 영조는 고례인 『의례』 중의 ‘長子三年服 云云’이라는 부분을 내세워 ‘傳重’, 곧 ‘繼體’의 의미를 극히 강조한 것이다. 肅宗喪시에 신료들의 衰經服制 시행으로 傳重者(국왕)에 대한 삼년상의 형식을 복구하였다면 영조는 차기 전종자(왕세자)에 대해서도 역시 삼년복을 입어 우대를 표하고자 한 것이다.

영조의 ‘장자삼년상제’는 비록 古禮(『의례』) 회복을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의례』 傳文만을 고려하고 疏文(賈公彥疏)은 전적으로 무시한 것이었으므로 결코 古禮라고 할 수 없다. ‘傳重’만을 극히 강조하여 傳文만을 보고 疏文의 ‘四種之說’이라는 단서 조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노론측에서는 양차예송에서 송시열의 四種之說이 분명하였으므로 이에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갑인예송의 경험 이후 이 문제를 회피해 오던 상황에서 다시금 문제를 일으키려 들지 않았다. 곧 判府事 兪拓基, 前持平 金元行, 副護軍 閔遇洙, 副司果 宋明欽, 前縣監 李養源 등의 諸臣은 한마디 獻議도 않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권상하의 직계 江門八學士의 일원으로 권상하의 高足 韓元震의 충실한 지지자였던 進善 尹鳳九도 “長子를 위해 삼년복을 입음은 周公이 經에 밝혔고 朱子가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이는 上下古今의 經法이나 時王의 제도는 長子·衆子 모두 暮年服으로 하였으니 찬집한 신하들이 뜻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꼭 釐整하려 한다면 예를 아는 諸臣들로 하여금 經傳과 先賢의 설을 考究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라며 쟁점을 회피하였다.

노론측의 반대로는 문제의 당사자인 김재로의 筭子が 유일하였다. 곧 그는 차자를 올려 양차예송시 송시열의 예설 및 주자의 예설에 근거하여 반대하였다. 먼저 양차예송에서 송시열이 사종지설에 입각하여 남인 예설을 비판할 때의 주장과 같이 세자상에 모두 삼년복을 하면 再服·三服을 하는 모순이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³⁹⁾ 또 宋 孝宗이 莊文太子喪에 단지 暮年服만 입었으며 그때 朱子도 삼년상을 행할 것을 청하지 않았다고 하였다.⁴⁰⁾ 또

38) 『영조실록』 권77, 영조 28년 7월 임오.

39) “이 일의 禮意는 지극히 精微하고 事面은 지극히 중대하니 여러 대신들이 모두 持難해 하였던 이유입니다. 대저 子를 위해 삼년복을 입는 것은 『儀禮』의 經文입니다. 다만 마땅히 입고 또 마땅히 입어서는 안되는 데는 허다한 까닭이 있어서 私家에서는 비록 長子의 상을 당하더라도 삼년복을 입는 경우가 드문 것입니다. 그런데 聖上께서 注疏의 설(四種之說-필자주)은 先朝에서 일찍이 쓰지 않던 바이고 帝王家에서 主鬯·承統하는 경우는 모두 마땅히 正嫡이 된다고 생각하시니 聖教의 뛰어난 실로 簡直·通暢하다 할 수 있으나 오히려 그 사이에 수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前代의 太子喪에 모두 삼년복으로 하였다면 아들을 위해 斬衰服을 입는 것이 한 번이 아닌 再服·三服의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 아들이 下喪하지 않았는데도 아버지가 참최복을 입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대저 斬衰는 服중 가장 凶하고 중대한 것으로 아들을 위해 참최복을 입는 것은 한 번도 오히려 重難한데 再服·三服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 傳(『의례』 子夏傳)에 이른바 ‘참최복은 두 번 입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이를 위해 준비한 것 같으며 周公이 예를 정한 뜻도 아마도 이와 같을 듯합니다.”(『영조실록』 권77, 영조 28년 7월 을유)

40) 위와 같음.

明朝 및 우리나라의 世祖·明宗·仁祖代 등의 고사를 들어 반대하였다. 이처럼 김재로의 ‘장자삼년상제’ 반대론은 양차예송시 송시열설 및 주자설에 근거한 바 주자예학의 정통론에 의한 것이었다.

‘장자삼년상제’는 君王에 대한 삼년복에 그치지 않고 군왕 후보인 왕세자에 대해서도 삼년복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영조의 ‘傳重=繼體’에 대한 강조가 왕위계승자뿐 아니라 왕위계승자 후보에까지 확대된 것이다. 영조의 繼體 강조는 결국 왕실의 위상 강화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尊王的 繼體論’으로 명명할 수 있다. 영조의 정통론 인식은 繼體를 극히 중시한 결과 繼體에다 倫序까지 고려하였던 주자예학의 ‘윤서적 계체론’과 입장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노론측의 史論에서는 “이번 복제의 제정에서 四種之說에 대해서는 한글자도 언급하지 않았으니 크게 疏漏하게 되었다. 古禮를 복구하여 『國朝喪禮補編』을 완성한다는 뜻이 어디 있는가?”⁴¹⁾라며 영조의 예설을 비판하였다.

‘장자삼년상제’를 시행한 후 영조는 長子婦服에 대해서도 김재로의 예설을 폐기하고 재판정을 내렸다. 곧 고례의 대공복이 아니라 唐代 이후의 예, 또 당대 이후의 예를 따른 국제에 따라 기년복으로 하고자 한 것이다.⁴²⁾ 장자복제에서 노론의 예설을 뒤집은 후 장자부복제에서도 노론의 설을 뒤집고 국제이자 오랜 祖宗前例를 따르고자 한 것이다. 이는 노론의 예학에 대한 영조의 견제를 잘 보여 준다.

김재로는 지금 이미 대공복으로 성복한 상황에서 다시 복을 바꾸는 것은 무리라며⁴³⁾ 반대하였다. 노론측의 반대는 김재로의 차자에 그쳤고 노론은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다. 영조는 이를 거리낌없이 밀고 나갔다. 예조에서는 大殿(영조)과 中宮殿의 복제를 기년으로 개정한 데 따라 복제를 고쳐 마련해 올렸다.⁴⁴⁾ 이후 長子에 대한 삼년복 및 長子婦에 대한 기년복의 경우 이에 따르는 視事服과 燕居服 조항이 문제되자 노론학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한결같이 몸소 처분하였다. 또 스스로 편찬을 주도하고 있던 『國朝喪禮補編』에 자신이 내린 처분들을 일일이 등재하여 분명한 전례로 만들었다.

영조는 성리학을 전공한 학인으로서 주자예학에도 조예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영조 27·28년 효순현빙상·의소세손상에서 처음에는 주자예학에 바탕한 노론의 예설을 전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주자예학의 전적인 수용과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왕실 위상 강화론은 동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영조는 주자예학의 ‘윤서적 계체론’에 의한 종전의 처분을 뒤집고 ‘존왕적 계체론’에 따라 ‘장자삼년상제’를 제정하고 또 『의례』

41) 『영조실록』 권77, 영조 28년 7월 임오.

42) “長子婦의 경우 古禮에 舅姑에 대해 暮年服을 입었기 때문에 따라서 大功으로 하였으나 唐代 이후 구고를 위해 삼년복을 입었기 때문에 장자부의 복도 또한 기년으로 하였으니 이제 마땅히 이를 따를 것이다.”(위와 같음)

43) 『영조실록』 권77, 영조 28년 7월 을유.

44) 『영조실록』 권77, 영조 28년 7월 병술.

를 중시한 노론의 예설도 국제로 대신하였다.

영조는 성리학의 ‘義理論’을 중시하면서도 이를 ‘堯舜之治’적인 왕정강화론으로 연결시키고자 하였는데 예학의 면에서도 주자예학에 구애되지 않고 왕정강화론에 입각하였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전중=계체’를 극히 강조하였고, 그 결과 주자예학의 정통론인 ‘윤서적 계체론’과 달리 ‘존왕적 계체론’이라는 정통론 인식을 보이게 되었다.

(2) 永寧殿 祝式 개정

영조의 신례 창설의 주요 기준이 되었던 ‘존왕적 계체론’이라는 正統論 인식은 영조 28년 ‘장자삼년상제’ 제정 외에도 동왕 33년 永寧殿의 祝式 개정에서도 잘 알 수 있다. 永寧殿은 五廟 체제인 종묘에서 代가 다해 遞遷되는 신주를 모신 別廟로 종묘 오른쪽에 있으며 제도적으로는 宋制를 따른 것이다.⁴⁵⁾ 영녕전에 모셔진 위패의 祝式에 대해 『오례의』에는 “孝曾孫 嗣王臣 諱某”라고 하되 ‘孝曾孫’ 부분은 상황에 따라 孝孫·孝子 등으로 고쳐 일컬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⁶⁾ 이에 따라 영녕전 各房 위패의 축식은 대부분 ‘孝曾孫 嗣王臣’이나, 유독 定宗·文宗·睿宗만은 ‘嗣王臣’으로 되어 있고, 德宗은 ‘國王臣’으로, 仁宗은 ‘孝曾姪 嗣王臣’으로 기재되었다. 또 왕비 위패의 축식은 원래 ‘祖妣’로 하는 것이 정식이나 定宗妃·文宗妃·德宗妃·睿宗妃는 단지 徽號만 있었다. 정종·문종·예종·인종은 비록 왕위에 오르는 하였으나 이후 傍親으로 밀려난 경우이며 德宗은 추존된 경우라서 이처럼 차등있는 축식이 사용된 것이다.

종묘·영녕전의 축식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16세기 초 중종대 기묘사림에 의해서였다. 곧 일반적인 종묘 축식은 ‘孝孫 嗣王某某’인데 文宗位의 경우 세조대 이래 ‘嗣王某某’만으로 칭해졌고 기묘사림은 이러한 차등을 없애고자 한 것인데 결국 祖宗前例에 따라 채택되지 못하였다.⁴⁷⁾ 이때 기묘사림은 ‘계체론’에 따라 문종과 세자는 형제지간이나 繼體하였으니 차등있는 축식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후기로도 이어졌는데, 영조대와 가까운 시기인 숙종대에 이르러 이에 대한 士論은 두 갈래로 나뉘게 된다. 곧 소론계는 여전히 이에 찬성하였던 반면 당시 주자예학 이해를 선도하고 있던 宋時烈·朴世采와 같은 산림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먼저 숙종 13년 소론신 판중추 南九萬, 승지 李彥綱 등이 발론하여 列聖들은 이미 계통을 잇고 또 추송되었으니 사당에 모신 후에는 축식을 한결같이 ‘孝曾孫 嗣王臣’으로 하고 왕비의 祝式은 한결같이 ‘祖妣’로 할 것을 청하였다. 이는 祖宗前例를 함부로 바꿀 수 없다

45) 『增補文獻備考』 권55 禮考2 宗廟一; 『燃藜室記述』 別集 권1 宗廟·永寧殿.

46) 『國朝五禮儀序例』 권1 祝板. “宗廟永寧殿文昭殿眞殿山陵 稱孝曾孫(孝孫孝子隨位改稱) 嗣王臣 諱.”

47) 줄고, 2000. 앞의 논문. 166~167면.

는 여론에 따라 무산되었는데,⁴⁸⁾ 이때 宋時烈은 고쳐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도 분명히 말하지 않아 간접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하였다. 朴世采 역시 獻議에서 난처하다고 하였다.⁴⁹⁾ 송시열은 노론의 비조로서 주자예학의 대가였고 박세채 역시 정치적으로는 소론으로서 송시열계 기성 서인들에 반대하였으나 학문적으로는 정통 주자학자였다. 특히 주자예학에 정통하여 많은 예서들을 남겼다. 숙종 21년 사후 그의 문인들이 대체로 노론으로 전향하게 된 것도 학문적인 성향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⁵⁰⁾ 곧 이 시기 주자예학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면서 송시열·박세채 등은 종래 사림들의 ‘계체론’적 정통론이 ‘繼體’만을 중시하고 ‘倫序’는 고려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게 되었던 것이다. 주자예학 연구를 통해 조선전기 이래 사림들의 오랜 ‘계체론’ 인식을 ‘倫序의 繼體論’ 인식으로 심화시켰던 것이다.

숙종 24년 端宗追崇시 祔廟에 사용되는 祝式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한 번 이 문제가 거론되었으나 정종·문종·예종의 예를 따라 단지 ‘嗣王臣’으로 정해졌다. 여전히 조종전례가 채택된 것이다.⁵¹⁾ 그러나 숙종 13년 송시열·박세채에 의하여 제기된 문제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었기에 논의는 영조대로 이어졌다.

영조 6년에 소론신 行司直 尹淳이 德宗室의 축식을 문제삼았다. 덕종은 국가의 직계 先代인데도 ‘國王臣’으로만 칭호하고 있다며 개정을 청하였고, 소론신 右相 趙文命은 이는 王統을 중히 여기고 嫌疑를 구별하는 의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나 세대가 바뀐 지금에서는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하였다.⁵²⁾ 조선전기 이래의 ‘계체론’에 의할 때 덕종은 단지 추승된 왕일 뿐으로 정통국왕과 같은 축식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나 소론신 윤순·조문명은 추승된 경우라도 정통국왕과 같은 축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소론 산림 祭酒 鄭齊斗는 ‘계체론’에 따라 “호칭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정통과 차이가 있음을 밝히려 한 것으로 주자의 정론이기도 하다”며 반대하였다.⁵³⁾ 이는 成宗代 德宗追崇시 叔姪 칭호를 사

48) 『肅宗實錄』 권18, 숙종 13년 7월 계묘.

49) 『燃黎室記述』別集 권1 祀典典故 宗廟·永寧殿; 『영조실록』 권31, 영조 8년 4월 갑진, 禮判 宋寅明의 上言.

50) 줄고, 1994, 「17세기 후반 전향노론학자의 사상」, 『역사와 현실』13.

51) 『숙종실록』 권32, 숙종 24년 12월 정미. 祔廟都監에서는 처음에 ‘孝曾孫 嗣王臣’으로 써 넣었다가 각 神室의 祝式이 다르다며 收議를 청하였고, 노론신 李世白과 소론신 崔錫鼎 등은 定宗·文宗·睿宗의 예를 따라 ‘嗣王臣’으로 할 것을 청하여 채택되었다.

52) 『영조실록』 권25, 영조 6년 2월 기유.

53) “德宗을 추존할 때 ‘孝姪 國王臣 諱 敢昭告于皇伯考某王’라 하였는데 ‘孝姪 國王臣’을 칭한 것은 성종이 실상 예종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사사로운 친속관계로 사왕을 칭할 수 없어 변통하여 칭호한 것이니 이는 예법의 당연한 바입니다. 또 ‘皇伯考 某王’으로 칭한 것 역시 정통과 달라서 某大王으로 칭하지 않고 정통과 구별이 있음을 표한 것입니다.” 이에 의심을 품은 영조가 홍문관에 명해 전례를 살피게 하니 홍문관에서는 『大明會典』 중 明 世宗代 睿宗의 축문에 ‘皇考’라 칭한 경우를 인용하였다. 영조가 다시 수의케 하니 鄭齊斗는 이 경우는 중국의 漢王 추승시 程·朱의 定論(宋 仁宗을 이어 즉위한 英宗은 傍親인 漢王의 아들로 生父 漢王을 皇帝로 追封하였는데, 이때 주자는 叔姪로 호칭할 것을 주장하였다)이 아니라고 반대하였다. (“이 경우는 國朝의 正禮와 현저히 다를 뿐 아니라 중국의 漢王論과 程·朱의 定論을 저버렸으며 우리 역대 왕실의 家法도 돌아보지 않고 단지 嘉靖 年間に 張璉·桂萼의 일만을 취한 것입니다. … 我朝의 『오례의』에 있어 성종이 비록 추존하였으나 叔姪의 칭호를

용하고 또 仁祖代 元宗追崇시 金長生이 稱叔論을 주장한 것과 동계의 논의인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를 거치면서 영조는 덕종과 같이 추송된 왕은 정통국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차등있는 축식을 사용해야 하지만, 추송된 국왕을 제외하고는 비록 倫序가 다르다 할지라도 계통을 이은 이상 한결같이 같은 屬稱(‘孝曾孫’)을 사용해야 하며, 이것이 역대 국왕들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곧 영조 16년에 太廟에 香祝을 전하면서 金在魯에게 祝式이 각기 다름이 이상하다며 상고해 바로잡을 것을 명하였다.⁵⁴⁾ 이때 영조는 “孝曾孫이라는 屬稱을 쓰거나 쓰지 않은 것은 널리 묻지 않을 수 없으나 國王臣이라고만 칭한 것은 대개 承統한 경우가 아니기(追崇되었기) 때문일 것이다”⁵⁵⁾라고 하였다. 추송된 왕은 정통으로 볼 수 없지만 추송된 왕을 제외한 경우는 (倫序가 달라도) 한결같이 ‘孝曾孫’으로 칭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영조 21년 지평 鄭權의 “太廟 祝辭는 비록 傍尊에게도 모두 ‘孝曾孫’이라고 일컫는 것이니 仁宗室의 ‘國’자는 더욱 빨리 고치지 않을 수 없다”⁵⁶⁾는 상소는 영조의 축식 개정 방향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조의 의도대로 개정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이에 특히 노론측의 ‘윤서적 계체론’이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었는데, 이는 영조 33년 영녕전 축식 개정에 대한 노론 상신 김재로의 입장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조 16년 영조가 축식 개정을 명한 이래 약 17년의 시간이 흐른 후인 영조 33년에 가서야 영조는 드디어 자신의 의도대로 축식을 개정할 수 있었다. 곧 이때에 영조는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예관을 불러 永寧殿 축식 개정을 단번에 명하였다. 이때 영조는

같은 殿內에 祝式이 같지 않으니 실로 미안한 일이다. 仁宗室에서만 홀로 ‘孝曾姪孫’이라고 일컫는 것은 直派가 아니라서 그러한 것 같으나 진실로 이와 같다면 定宗·文宗·端宗·睿宗 四室도 마땅히 이렇게 써야 할 것이다. 나는 후한 쪽을 따르는 의도로 諸室에 대하여 모두 ‘孝曾孫’으로 일컫고자 한다.⁵⁷⁾

고 하였다. 여기서 영조가 특히 ‘仁宗室’의 축식에 문제를 느끼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仁宗은 정통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위후 수개월만에 소생없이 홍거, 이복동생인 명종에 의해 계승된 후 종묘 祝式도 ‘孝曾孫 嗣王臣’이 아닌 ‘孝曾姪孫 嗣王臣’으로 사용되고, 原廟 祔廟시에도 正殿인 文昭殿 대신 別殿인 延恩殿으로 모셔지는 등 차등을 받았다. 영조는 ‘계체’를 극도로 중시하는 ‘존왕적 계체론’의 입장에서 인종의 처지를 매우 동정하게 되었

사용한 것은 『춘추』 魯 僖公의 逆祀의 의미가 없다는 뜻과 宋 濮王의 논의에 두 王統의 혐의가 없어야 한다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54) 『영조실록』 권51, 영조 16년 5월 무진.

55) 『영조실록』 권51, 영조 16년 6월 경오.

56) 『영조실록』 권62, 영조 21년 8월 병진.

57) 『영조실록』 권90, 영조 33년 영조 12월 병인.

다. 영조의 이 전교에 대해 당시 노론탕평파 대신으로 영조후반기 蕩平堂 세력의 중심이었던 洪啓禧는 영조에 적극 영합하여 “인종상에 諸臣들이 無常하게도 1년을 넘기지 못한 왕이라 하여 五月葬도 행하지 않았는데, 또 姪이라 일컬은 것은 후세에 본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영조는 얼굴빛이 변하면서 더욱 釐整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영조가 축식 개정을 명하자 당시 노론탕평파 대신이면서도 주자예학을 전공하여 노론의 예설을 대표하고 있던 領府事 金在魯의 반박이 있었다. 그는 일단 “國家에서 傍祖位에게는 ‘祖妣’ 나 ‘孝曾孫’을 일컫지 않습니다”라고 전제하였다. 주자예학의 ‘윤서적 체계론’에 따라 正統과 傍統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영조의 의도를 십분 수용하여, 德宗은 正儲(왕세자)였으며 또 追崇되었으나 실제로 成廟를 낳은 점, 또 예종은 성종이 계통을 이은 점이 있으니 傍祖의 예로 할 수 없으므로 德宗·睿宗室만은 예외적으로 ‘孝曾孫’을 칭하고 定宗·文宗·端宗·仁宗室에는 ‘孝曾姪孫’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⁵⁸⁾ 이미 정해진 영조의 뜻을 물리치고 한결같이 정·방통을 구분하기에는 미안하였으므로 방통이나 다소의 여지가 있는 덕종·예종에게만은 정통의 지위를 부여하자는 타협책이었다. 이처럼 일부 사안은 양보하면서도 정·방통을 구분하는 노론의 ‘윤서적 체계론’의 대체는 지키고자 한 것이다. 영조는 김재로의 타협안에 일말의 관심도 보이지 않고 영녕전 각실에 똑같이 ‘孝曾孫’ 및 ‘祖妣’를 칭하게 하였다. 洪啓禧는 列聖의 誌狀도 이에 따라 增修할 것을 청하여 시행되었다.⁵⁹⁾

영조는 애초 덕종과 같이 추승된 국왕은 정통국왕과 같은 호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므로 每室에 모두 ‘효증손’을 칭하게 하였으나 德宗室에 한해서 덕종이 추승되었기 때문이라며 ‘孝曾孫 嗣王臣’ 대신 ‘孝曾孫 國王臣’으로 하게 하였다. 그러나 역시 추승된 왕인 元宗의 경우 ‘孝曾孫 嗣王臣’이라는 축식을 쓰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가 지적되자 영조는 추승된 국왕, 정통 국왕 할 것 없이 한결같이 ‘孝曾孫 嗣王臣’으로 할 것을 명하였다.⁶⁰⁾ 곧 영조의 ‘체계론’ 이해는 애초 ‘倫序’적인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왕실 위상 강화론에 따라 한결같이 ‘傳重=繼體’만을 중시하는 ‘존왕적 체계론’이었는데, 이때에 이르러서는 추승된 국왕과 정통 국왕을 구별하지 않을 정도로까지 ‘존왕적’인 측면이 훨씬 강화되었다.

58) “國家에서 傍祖位에게는 ‘祖妣’ 나 ‘孝曾孫’을 일컫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 德宗은 이미 正儲이고 또 追崇되었지만 실제로 成廟를 낳으셨으니 傍祖의 禮로 쓸 수 없습니다. 예종은 성종이 이미 계통을 이어 자가 되었으니 더욱 傍祖의 예로 할 수 없습니다. 聖意가 厚한 쪽을 따르려 하니 各室에 모두 ‘祖妣’ 字를 써야 하는데 德宗·睿宗室에는 ‘孝曾孫’으로 하되 定宗·文宗·端宗·仁宗室에는 ‘孝曾姪孫’으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위와 같음)

59) 『영조실록』 권90, 영조 33년 12월 임신.

60) “한 개의 ‘嗣’ 字를 홀로 빠뜨리게 되면 마음이 편치 못할 것이니 기왕에 ‘孝曾孫’으로 일컬었다면 무엇이 어렵겠는가.”(『영조실록』 권90, 영조 33년 영조 12월 병인.)

3. 崇奉·伸冤을 통해 본 ‘尊王的 禮學’

(1) 歷代 始祖 및 先祖 崇奉

영조의 正統論 인식인 ‘존왕적 계체론’에서 알 수 있듯이 영조의 예학은 기본적으로 ‘존왕적’인 지향을 갖고 있었다. 영조의 존왕적 예학 경향은 正統論뿐 아니라 歷代 始祖 및 先祖에 대한 지극한 숭봉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먼저 歷代 始祖에 대한 崇奉 조치이다. 영조 2년 『資治通鑑綱目』을 강하다가 고려 太祖의 이름이 나오자 “고려조에 我朝의 네 왕이 벼슬을 하였으니 비록 지금 신하들이 휘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 君王의 입장으로는 마땅히 휘해야 옳다”며 諱하게 하였다.⁶¹⁾ 恭讓王에 대해서도 太祖가 그를 왕으로 섬겼다 하여 신하들에게 廟號를 사용하게 하였다.⁶²⁾ 동왕 8년에는 李宗城의 청에 따라 신라 시조를 모신 경주의 崇德殿에 致祭하고 奉審하게 하였으며,⁶³⁾ 고려 王氏의 자손과 麗末의 충신 金澍의 후손을 녹용하게 했다.⁶⁴⁾ 또 金取魯의 청에 따라 고구려 東明王墓에 致祭하였다.⁶⁵⁾ 동왕 22년에는 檀君朝鮮으로부터 前朝(高麗)에 이르기까지 陵寢이 있는 곳은 道臣으로 하여금 가을을 기다려 修治하게 하고 禮曹에서 香을 내려 本道로 하여금 제사하게 하였다.⁶⁶⁾ 동왕 30년에는 南漢山城에 있는 백제 溫祚王의 묘를 奉審하게 하였으며,⁶⁷⁾ 동왕 39년에는 고려조의 舊陵과 나아가 檀君·箕子 및 高句麗·百濟·新羅의 시조능을 수축하게 하고,⁶⁸⁾ 廣州府尹에게 명하여 백제 溫祚王의 墓를 증수하게 하였다.⁶⁹⁾ 동왕 41년에는 고려조의 諸陵을 살펴 보수하고 근처의 暗葬한 묘를 발굴하게 하였다.⁷⁰⁾ 또 고구려 東明王墓의 祭文을 짓고 香祝을 보내고 황해도 구월산 三聖廟 土版을 나무 牘으로 만들어 덮으라 명한 후 나무 牘의 제도를 몸소 그려 보냈다.⁷¹⁾ 동왕 49년에는 고려조의 諸陵을 다시 한 번 봉심하게 하고 王氏 三人을 調用하도록 조치하였다.⁷²⁾ 영조 50년

61) 『영조실록』 권9, 영조 2년 5월 을묘.

62) 『영조실록』 권67, 영조 24년 6월 병인.

63) 『영조실록』 권31, 영조 8년 1월 기사.

64) 『영조실록』 권31, 영조 8년 1월 기사.

65) 『영조실록』 권31, 영조 8년 1월 경오.

66) 『영조실록』 권63, 영조 22년 5월 병신.

67) 『영조실록』 권81, 영조 30년 3월 병진; 권101, 영조 39년 5월 병술.

68) 『영조실록』 권101, 영조 39년 4월 경술.

69) 『영조실록』 권101, 영조 39년 5월 병술.

70) 『영조실록』 권106, 영조 41년 9월 기축.

71) 『영조실록』 권106, 영조 41년 12월 계유.

72) 『영조실록』 권121, 영조 49년 10월 병오.

에는 檀君廟로부터 고려조의 諸陵에 이르기까지 祀典이 있던 모든 곳에 대해 道臣으로 하여금 奉審, 보수하게 하였다.⁷³⁾

다음 先祖, 곧 朝鮮朝의 國王·妃嬪·大君 등에 대한 崇奉 조치로는 첫째 先王과 관련한 저작물의 간행·보급, 둘째 祀典의 강화, 셋째 陵墓의 修改 등이 있다. 첫째 先王과 관련한 저작물의 간행·보급이다. 동왕 4년에는 趙顯命 등에게 列朝의 嘉言·善政을 모아 『祖鑑』(4권)을 편찬하게 하였고 이를 동궁에게도 진강시켰다. 동왕 7년에는 『宣祖寶鑑』을 간행해 올리게 하였으며⁷⁴⁾ 兩對(召對·夜對)에서 『國朝寶鑑』을 매우 자주 진강하였다. 영조의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여 동왕 7년 李世瑾은 列聖朝의 嘉言·善政을 모은 『聖朝羹牆錄』을 편집하기도 하였다.⁷⁵⁾ 동왕 18년에는 세조가 병조판서 때에 지은 『兵將圖說』을 간행하여 각도에 반포하였으며,⁷⁶⁾ 동왕 23년에는 世祖의 『御製訓辭』를 간인하였다.⁷⁷⁾ 동왕 26년에는 세종이 간행한 『三綱行實』·『續三綱行實』을 간인·반행하며,⁷⁸⁾ 동왕 30년에는 세종대에 나온 『治平要覽』을 구해 올리도록 하였다.⁷⁹⁾ 『선원록』도 열심히 개수하여 동왕 23년 『璿源譜略』의 정비를 명한 이래⁸⁰⁾ 결국 동왕 30년에 『璿源譜略』을 개수하였다.⁸¹⁾ 탕평 사업의 기초로서 왕실의 계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향은 숙종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⁸²⁾ 영조는 전대의 이러한 전통을 이어 『선원록』을 지속적으로 개수하였던 것이다.

영조는 이처럼 왕실 관련 저작물을 보급, 강조하면서 선조들의 도덕적 하자가 지적된 부분에는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였다. 곧 영조 25년 召對에서 『麗史提綱』을 강하면서 「恭讓王朝」에 太宗이 鄭夢周를 죽인 부분이 나왔는데, “이를 그대로 두면 後王의 마음이 불편하며 또 威化島回軍의 大義는 이미 드러났으니⁸³⁾ 비록 兪槩가 다시 태어나도 내 말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라며 史庫의 『여사제강』을 모두 洗草하고 私家 소장본의 경우 이 부분을 바로잡게 하였다.⁸⁴⁾

先祖 崇奉에는 祀典의 강화라는 방식도 동원되었다. 우선 영조 5년에는 숙종을 종묘의 世室, 곧 不遷位로 만들었다.⁸⁵⁾ 일반적으로 不遷位는 왕실의 창업과 부흥에 특별한 공을 세운

73) 『영조실록』 권122, 영조 50년 5월 계유.

74) 『영조실록』 권29, 영조 7년 6월 을미.

75) 『영조실록』 권30, 영조 7년 8월 신축.

76) 『영조실록』 권56, 영조 18년 8월 기유; 동년 10월 경자.

77) 『영조실록』 권65, 영조 23년 1월 정미.

78) 『영조실록』 권72, 영조 26년 9월 정사.

79) 『영조실록』 권81, 영조 30년 3월 계축.

80) 『영조실록』 권65, 영조 23년 2월 경진.

81) 『영조실록』 권81, 영조 30년 1월 경진.

82) 참고, 1995, 앞의 논문, 193면.

83) 숙종초 송시열이 威化島回軍은 對明義理를 위한 것이라는 관점하에 이를 大義로 表章하고 太祖와 太宗에게 이와 관련한 徽號追上을 청하여 성사된 사실을 의미한다.

84) 『영조실록』 권69, 영조 25년 5월 병인.

85) 『영조실록』 권24, 영조 5년 12월 신축.

聖王들에게만 배풀어지는 것으로 대체로 薨去後 몇 대가 흘러 여론이 공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였다. 따라서 조선전기에는 태조·태종·세조 등 극소수 군왕에게만 배풀어지는 등 불천위 선정은 매우 조심스럽게 시행되었고 시간적으로도 몇 대 이후에야 가능했다. 그러나 영조는 이러한 관례를 무시하고 즉위초의 시점에서 숙종을 불천위로 올렸고 이는 이후 일종의 관례가 되었다. 영조 30년 大君·王子·公主·翁主는 親盡하더라도 不祧하기를 명한 것도⁸⁶⁾ 왕족들에 대한 祀典의 격을 높은 존왕적인 방향의 예제였다. 先祖에 대한 祀典의 강화는 왕실의 위상 강화라는 존왕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예의 차서와 등급을 중시하는 주자예학과 경향을 달리한 것이었다.

先祖에 대한 祀典의 강화는 역대 선조들의 御眞을 모신 전각인 眞殿 제도의 정비로도 드러났다. 기왕에는 全州·咸興·江都의 眞殿을 일반인들이 사사로이 奉審할 수 있었는데 영조 22년 이를 금하였으며, 眞殿의 酌獻禮를 국왕이 親祭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아 제례의 등급을 상향 조정하였다.⁸⁷⁾ 이에 대해 노론측에서는 “宗廟의 제사는 근엄한 것을 위주로 하고 陵寢의 제사는 情理를 위주로 한 것으로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도 宗廟의 祭禮와 똑같이 한다”⁸⁸⁾며 불만을 표하였다. 영조는 많은 眞殿들 중에서도 특히 永禧殿을 重修하고 祭香을 강화하는 등 영희전을 중시하였다. 영희전의 처음 이름은 南別殿으로 광해군 11년에 太祖와 世祖의 御眞을 봉안하였으며 인조 15년에는 世祖와 元宗의 御眞을 봉안하였다. 이후 숙종 14년에는 全州 慶基殿에 봉안된 太祖의 영정을 모사해 올려 一殿三室 체제가 되었고 숙종 16년에는 永禧殿으로 개칭되었다.⁸⁹⁾ 숙종 21년에는 肅宗의 어룡이 완성되었으나 一殿三室의 영희전에는 이를 모실 만한 장소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조는 동왕 23년 一室을 증축하여(一殿四室) 숙종의 어룡을 모셨다. 이때에 이르러 世祖·元宗·太祖의 御眞도 改本되었다.⁹⁰⁾ 영조 23년 이후 永禧殿의 제향은 매우 강화되었다.

眞殿 외에도 영조 47년에는 전주 이씨의 시조인 司空公 李翰을 모신 肇慶廟도 건립되었다. 이때에 七道儒生 李得履 등이 司空公을 모신 廟의 건립을 청하자 영조는 慶基殿 옆에 肇慶廟를 건립하며 祭物과 廟官은 慶基殿의 예에 준하게 한 것이다.⁹¹⁾

다음은 陵墓의 修改이다. 영조대 능묘 수개는 영조 20년경부터 시작되었다. 영조 20년 임란시 파괴된 이래 개수되지 못하고 있던 齊陵(太祖의 第一妃인 神懿王后의 능)의 神道碑를 이때 와서 비로소 고쳐 세웠다.⁹²⁾ 이를 시작으로 諸陵의 修改는 영조대 일상적인 행사가 되다시피 하였다. 본격적으로 諸陵의 수개를 시작한 시기는 동왕 22년부터였다. 곧 이때 영

86) 『增補文獻備考』 권86 禮考33 私祭禮.

87) 『영조실록』 권63, 영조 22년 5월 병신.

88) 『영조실록』 권63, 영조 22년 5월 병신.

89) 『增補文獻備考』 권59 禮考6 影殿; 『都城志』 永禧殿條.

90) 『영조실록』 권67, 영조 24년 1월 임인, 2월 정묘·기묘.

91) 『영조실록』 권116, 영조 47년 임신·갑술·계미.

92) 『영조실록』 권60, 영조 20년 11월 정축.

조는 특명으로 孝寧大君(太宗의 第二子)의 廟宇를 창건하고 致祭하였다.⁹³⁾ 이어 좌상 宋寅明을 보내 義陵(太祖의 祖인 度祖의 능)을 修改하였으며,⁹⁴⁾ 掌令 金翰運의 청에 따라 惠陵(경종의 第一妃인 端懿王后 沈氏의 능)의 標石을 건립하고 穆陵(宣祖의 능)에도 標石을 건립하게 했다.⁹⁵⁾ 이어 長陵(仁祖와 第一妃 仁烈王后의 능)에 石物을 세운 뒤 徽陵(인조의 第二妃인 莊烈王后의 능)에도 장릉의 경우와 같이 石物을 세우게 하였다.⁹⁶⁾ 이어 여러 陵寢의 碑役을 시작하게 하였는데 우선 가까운 곳인 章陵, 康陵, 泰陵, 孝陵, 禧陵부터 거행하게 하였다. 이 碑役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영조 29년에는 이를 준행하기 위한 營建都監이 설치되기도 하였다.⁹⁷⁾ 碑役사업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자 동왕 30년에는 顯陵·光陵·敬陵·昌陵의 四陵의 表石부터 먼저 시작하라고 독려하였다.⁹⁸⁾ 동왕 39년에는 淑陵·智陵을 修改하게 하고 領相 申晩을 보내 감독하게 하였는데,⁹⁹⁾ 이때에는 廢君인 燕山君과 光海君의 墓까지도 수개하였다.¹⁰⁰⁾ 연산군의 墓에 대해서는 동왕 50년 별도로 守墓軍을 지정하고 연중 1차 제사하도록 조치하였다.¹⁰¹⁾ 잠시나마 군주의 位에 올랐다 하여 廢君들에게조차 두터이 예우하였던 것이니 이 역시 영조의 ‘尊王의’ 예학 경향을 잘 보여준다.

영조가 얼마나 諸陵 수개에 몰두하였는가는 “즉위 이래 先代를 崇奉하는 典禮에 매양 뜻을 다하여 鄉儒들이 번번이 이를 인연하여 은택을 바라는 자들이 매우 많았다”¹⁰²⁾는 史評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가령 海州 유생 李正著 등은 太祖가 왜적을 추격하여 승첩한 海州의 東亭, 宣祖의 駐蹕堂, 元宗의 潛邸, 仁祖의 탄생지 등에도 碑와 宮闕을 건립할 것을 청하였으며 松都 유생 韓命相 등도 상소하여 태조의 舊基에 궁을 건립할 것을 청하였다.¹⁰³⁾

영조는 諸陵을 수개한 후 친히 나아가 예를 행하기도 하였다. 碑役이 한창 진행되던 동왕 29년에는 健元陵·穆陵·徽陵·惠陵·崇陵·懿陵에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¹⁰⁴⁾ 영조는 만년에 갈수록 享祀에 더욱 정성을 다해 비록 한더위, 한추위에도 攝行을 명하는 일이 거의 없이 정성을 다하였고 특히 숙종 묘실에 들어갈 적마다 오래 부복하여 눈물을 줄줄 흘릴 정도

93) 『영조실록』 권63, 영조 22년 3월 임오.

94) 『영조실록』 권63, 영조 22년 5월 정유.

95) 『영조실록』 권64, 영조 22년 11월 경술.

96) 『영조실록』 권64, 영조 22년 11월 임자.

97) 『영조실록』 권79, 영조 29년 1월 정묘.

98) 『영조실록』 권82, 영조 30년 12월 병진. 顯陵은 文宗과 顯德王后, 光陵은 世祖와 貞熹王后, 敬陵은 德宗과 昭惠王后, 昌陵은 睿宗과 第二妃인 安順王后의 능이다.

99) 『영조실록』 권101, 영조 39년 2월 기해. 智陵은 太祖의 曾祖인 翼祖, 淑陵은 太祖의 曾祖母인 翼祖妃의 능이다.

100) 『영조실록』 권101, 영조 39년 4월 병오.

101) 『영조실록』 권123, 영조 50년 7월 임신.

102) 『영조실록』 권52, 영조 16년 9월 정축.

103) 위와 같음.

104) 『영조실록』 권80, 영조 29년 8월 신묘. 健元陵은 太祖, 穆陵은 宣祖, 徽陵은 仁祖의 第二妃인 莊烈王后, 惠陵은 景宗의 第一妃인 端懿王后, 崇陵은 顯宗과 明聖王后, 懿陵은 景宗과 第二妃 宣懿王后의 능이다.

였다.¹⁰⁵⁾

(2) 先祖 伸冤

영조 예학의 존왕적 경향은 先祖의 伸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죄를 짓거나 무고를 입어 位號가 깎이거나 죽음을 당한 왕족들을 伸冤시키고자 하는 논의는 조선전기 이래 士林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거론되었는데, 그 시초는 世祖에 의해 내쳐진 昭陵(文宗妃 顯德王后 權氏)의 복위론이었다. 소릉 복위론은 성종·연산군대 사림에 의해 거론되다가 戊午士禍의 일원인이 되는 등 왕실에 의해 계속 거부되었는데, 중종 8년 己卯士林에 의해 성사되었다. 이때 사림들은 의리론을 내세워 복위론을 주도하였고 왕실·대신측에서는 조종전례를 들어 복위를 어렵게 여겼다.¹⁰⁶⁾

조선후기에도 선조 신원론은 계속되었는데, 현종말·숙종대 이후에는 서인-노론에 의해 주도되었다. 성리학의 의리론 및 주자예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이를 전공한 서인-노론이 논의를 주도한 것이다. 현종 10년에는 서인 李敏敍가 貞陵(太祖의 繼妃 姜氏) 復位를 거론하였다.¹⁰⁷⁾ 貞陵은 태조의 正妃였음에도 불구하고 太宗과의 불화로 능은 훼손되고 신위는 종묘에도 들지 못하였다. 중종대의 소릉 복위와 달리 정릉건은 사건이 오래되고 근거를 찾기 어려워 거론되지 못하다가 선조 14년에 처음으로 거론되었으나 조종전례를 내세운 선조에 의해 거부되었다.¹⁰⁸⁾ 현종 10년 정릉복위론은 이민서에 의해 발론되었으나 실제로 이 논의를 주도한 사람은 당시 서인계 산림으로 현종에게 우대되고 있던 宋浚吉이었고 송준길의 배후에는 송시열이 있었다.¹⁰⁹⁾ 논의는 비록 서인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이는 조선전기 이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던 부분이어서 서·남인 할 것 없이 모두 찬성하였다. 현종은 처음에는 祖宗前例를 내세워 거부하였으나 결국 여론에 밀려 神德王后라는 廟號를 내리고 능을 수개하며 종묘에 祔하였다.¹¹⁰⁾

숙종대에도 선조 신원론은 계속되었는데 이때에는 국왕이 복위사를 주도하게 되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숙종은 魯山君, 中宗妃 愼氏, 昭顯世子嬪 姜氏의 復位를 추진하였다. 노산군의 경우 숙종 7년 魯山君을 魯山大君으로 올리고 死六臣의 숭봉을 권장하다가 동왕 24년 노산군과 중종비 신씨의 位號追復논의를 주도하여¹¹¹⁾ 결국 노산군을 복위

105) 『영조실록』 권86, 영조 31년 10월 을사.

106) 참고, 2000, 앞의 논문, 127면.

107) 『현종실록』 권16, 현종 10년 3월 신미.

108) 참고, 2000, 앞의 논문, 230면.

109) 『현종실록』 권16, 현종 10년 5월 병오·신해.

110) 『현종실록』 권16, 5월 신해; 권17, 동년 8월 을축 등.

111) 숙종은 이때 “이 일은 이미 마음속으로 말없이 계획했던 바”임을 공공연히 토로하였다(『숙종실록』 권32, 숙종 24년 10월 갑자).

하여 廟號를 端宗으로, 능호를 莊陵으로 하고 『魯山君日記』를 『端宗大王實錄』으로 改名하였다. 단, 中宗妃 愼氏의 경우는 복위 명분이 부족하다는 신하들의 반대로 복위를 미루었다. 노산군이 복위된 이후 노론집권하인 숙종 44년에 숙종은 다시 昭顯世子嬪 姜氏 복위를 거론하여 결국 시호를 내리고 소현세자묘에 合祀하였다. 이들 복위사에서 소론은 조종전례를 들어 불가하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노론은 송시열의 예설을 근거로 적극 찬성하였다.¹¹²⁾ 의리론이 시대적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왕실의 입장에서 의리론에 따라 왕족을 신원하는 것이 왕실의 위상 강화에 주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영조는 숙종대부터 나타난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먼저 영조는 숙종대 복위가 거론되었으나 차후로 미루어졌던 中宗妃 愼氏를 동왕 15년에 드디어 복위시켰다. 중종비 愼氏는 부친 愼守勤이 연산군비의 오빠라는 이유로 반정 직후 朴元宗 등 반정신들에 의해 廢位되어 사가로 물러났다. 중종 10년 中宗繼妃(章敬王后)가 흥서하자 己卯士林인 朴祥·金淨 등에 의해 壺位 회복이 청해지기도 하였으나 무위로 그치고 사가에서 불우한 생애를 마쳤다.¹¹³⁾ 기묘사림의 문제제기 이후 愼妃復位는 사람들의 공론이 되었고 노론의 송시열은 특히 노산군 문제와 함께 신비의 복위를 주장하였다. 숙종 24년에는 숙종에 의해 복위가 거론되었으나 의논이 일치하지 않아 단지 順懷世子(明宗의 子)廟·昭顯世子廟의 예에 따라 守僕이 守直하고 太常寺에서 祭需를 갖추어 보내어 祝辭 없이 제사하게 하였다.¹¹⁴⁾

영조대 중종비 복위시에도 복위는 노론·소론이 아니라 영조에 의해 주도되었다. 영조는 전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가 먼저 大臣들에게 말을 꺼내었는데, 소론신 宋寅明과 노론신 呼罕 兪拓基 등은 事體가 무겁다며 난색을 표하였다. 그러나 聖意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소문이 외간에 알려지게 되면서 幼學 金台南이 상소하여 신비 복위를 청하게 되었다. 이 상소가 나오자 영조는 매우 기뻐하며 곧바로 收議를 명하였다.¹¹⁵⁾ 대세가 복위로 기울게 되자 신하들은 모두 영조의 뜻에 부응하여 復位와 定號를 청하였다. 여기에는 당시 영조를 적극 보좌하면서 탕평의 주인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徐明均·李宗城·朴師洙 등의 소론탕평파가 힘써 찬성하였다.¹¹⁶⁾ 결국 영조는 愼妃에게 諡號로 ‘端敬’, 徽號로 ‘恭昭順烈’, 陵號로 ‘溫陵’을 내려 복위, 祔廟하였고 愼妃의 부친 愼守勤에게도 贈諡하였다.¹¹⁷⁾

신비 복위 다음으로 영조는 동왕 23년 端宗復位를 도모하다 世祖에 의해 죽임을 당한 世宗의 第三子인 安平大君 瑋의 관작을 회복하였다.¹¹⁸⁾ 이는 부왕 숙종의 단종복위 처분을 뒤

112) 참고, 1995, 앞의 논문, 193~194면.

113) 참고, 2000, 앞의 논문, 167면.

114) 『숙조실록』 권32, 숙종 24 10월 을축; 『增補文獻備考』 권55 禮考2 宗廟1.

115) 『영조실록』 권49, 영조 15년 3월 기유.

116) 『영조실록』 권49, 영조 15년 3월 경신. 특히 소론탕평파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던 李台佐·李宗城父子는 숙종대 소론신 李世弼(李台佐의 父, 李宗城의 祖父)이 愼妃의 복위를 논한 글인 「王朝禮文」을 올렸다.

117) 『영조실록』 권49, 영조 15년 3월 신유·임신·갑술, 5월 무오.

이은 조처였다. 영조는 이에 앞서 동왕 22년에 端宗祖의 忠臣인 金宗瑞, 皇甫仁 등의 관작을 회복하기도 했다.¹¹⁹⁾ 이와 같이 영조대 역대 시조 및 선조 추숭, 선조 신원은 영조의 존왕적 예학 경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맺음말

조선후기 노론의 '의리론'은 숙종 후반기 이래 조선 국왕에게도 효과적인 통치술로서 주목되었고, 이에 국왕이 오히려 '의리론'을 주도하려는 경향까지 보였다. 특히 강력한 왕정을 지향한 탕평군주에게 이는 탕평의 관건으로 이해되었다. 숙종을 이어 본격적으로 탕평을 시행했던 영조에게는 辛壬義理論을 내세워 영조를 강박하려 드는 노론을 제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으므로 영조는 즉위초부터 정치적, 학문적으로 노론을 적극 견제하였다. 이는 조선후기 사회의 기본 노선이 된 '의리론'의 주도권 둘러싼 노론과 국왕의 대립이기도 했다.

영조 즉위후 노론은 정치적인 면에서뿐 아니라 예학적인 면에서도 '주자예학'에 의거, 경종대 관철된 소론의 예설을 공격하고 노론의 오랜 당론이었던 예설들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영조는 이를 노론 산림에서 나온 당론으로 인식,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영조는 '주자예학'에 구애되지 않고 많은 新禮들을 창설하였다. 숙종대까지만 하더라도 王禮 운영에서는 國制(『經國大典』·『國朝五禮儀』)가 기준이 되었으나 영조는 애초부터 국제를 고집하지 않았다. 주자예학에 기초한 당시의 일반적인 예학 인식이 비추어 더 이상 국제라는 권위에만 기댈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자예학'의 권위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도 영조는 '주자예학'을 기준삼지 않았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건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그 적용방식을 둘러싸고 왕실과 사대부간의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예학면의 경우 왕실은 주자예학을 士禮로 인식, 王禮와 士禮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건국초 이래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조의 制禮 기준은 국제도 주자예학도 아닌 '尊王的'인 것이었다. 영조의 존왕적인 예학 인식은 正統論에 대한 영조의 이해 방식, 곧 '尊王的 繼體論'에서 잘 알 수 있다. 예학에서 정통론 인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생각해 볼 때 영조의 '尊王的 繼體論'은 영조 예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영조에 의해서 창설된 허다한 신례들의 制禮 기준이자 영조대 영조에 의해 주도된 王禮 운영의 근간이었다. 이는 영조 28년의 '長子三年喪制' 제정과 동왕 33년의 永寧殿 祝式 改正에서 잘 알 수 있다.

조선전기 사림들의 정통론 인식인 '繼體論'은 주자예학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는 17세기

118) 『영조실록』 권66, 영조 23년 9월 계축.

119) 『영조실록』 권64, 영조 22년 12월 무자.

를 거치면서 宋時烈·朴世采 단계에 이르러 한 단계 심화된다. 곧 기존의 ‘繼體論’은 ‘繼體’만을 중시하고 ‘倫序’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倫序’까지 고려한 ‘繼體論’, 곧 ‘倫序的 繼體論’으로 심화되었던 것이다.

영조대 長子三年喪制와 永寧殿 祝式 改正 논의에서 金在魯로 대표되는 노론측에서는 주자예학의 ‘윤서적 계체론’에 따른 정통론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영조는 ‘倫序’는 무시하고 ‘繼體(傳重)’만을 극히 강조하는 방식으로 ‘繼體論’을 이해하였고 이에 따라 장자삼년상제라는 新禮를 제정하고 영녕전 축식을 개정하였다. 영조가 ‘繼體’를 극히 강조한 것은 탕평군주의 ‘尊王的’ 입장에 서서 正統論을 이해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尊王的 繼體論’으로 부를 수 있다.

영조의 존왕적 예학 경향은 正統論뿐 아니라 歷代 始祖 및 先祖에 대한 崇奉, 先祖 伸冤 등에서도 잘 알 수 있다. 歷代 始祖에 대한 崇奉은 역대 시조의 陵墓를 修改하고 祠宇를 건립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先祖, 곧 朝鮮朝의 國王·妃嬪·大君 등에 대한 崇奉은 先王과 관련한 저작물의 간행·보급, 祀典의 강화, 陵墓의 修改 등의 방식으로 나타났다. 先祖 伸冤의 경우 조선전기 이래 士林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거론되었는데 조선후기 성리학의 의리론 및 주자예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주자예학을 전공한 서인-노론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다가 숙종대부터는 국왕이 주도하게 되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성리학의 ‘의리론’을 왕실이 주도하려 했던 분위기의 소산이었다. 영조 역시 이러한 경향을 이어 영조 15년 中宗妃 愼氏의 복위를 주도하였다.

영조는 만년 성리학의 ‘의리론’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국왕의 입장에서 ‘의리론’ 일변도의 방식을 취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예학면에서 노론의 주자예학에 구애되지 않고 尊王的 기준을 가지고 예제 운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드러났다. 조선후기 국왕들은 肅宗代까지만 하더라도 예제 운영에서 國制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주자예학’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영조대에 이르러 영조는 더 이상 國制를 고집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변화 속에 영조는 더 이상 國制를 고집하지도 노론의 ‘朱子禮學’을 따르지도 않는 새로운 존왕적인 방식을 제시하였다. 18세기 이후 조선 왕실의 예학적 입장이 새로이 정립된 것이다.